

# 전형별 제출서류

## □ 서류전형

### ○ 필수(9종)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청자 및 가구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 ③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신청자 및 가구원에 대한 제공하도록 요구 동의)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에 대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 ⑤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배우자 관련 제공 동의)
- ⑥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및 가구원 관련 정보 확인)
- ⑦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가족 정보 확인)
- ⑧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 ⑨ 자기소개서 (면접 기초자료)

### ○ 해당자(1종)

- ①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 (선택) 가점대상자(6종)

- ①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
- ② 여성세대주 관련 증빙서류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여성, 배우자 없는 기혼여성 등)
- ③ 재산4억초과 가감조정 서류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
- ④ 경력증명서 사본 (퇴직 경찰·군인, 경비·경호업체 경력자)
- ⑤ 경호관련 자격증 사본 (공인무도단증,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 ⑥ 국민체력100 참여증명서 및 등급표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측정기준)

## □ 면접전형(2종)

- 기본증명서 (결격사유 조회용)
- 주민등록초본 (병역 확인용)

### ※ 제출서류 유효 기준일

- 자격증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유효한 경우에 한함, 원본 지참
-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공고일('23.6.30.)이후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23.07.12) 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은 공고일('23.06.30.)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임용결격사유

## □ 관련근거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